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 /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21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■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(2025. 2. 12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주유미 교육청소년과장)

가. 개정사유

○ 「민법」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포항시 장학회 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,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장학회의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(안 제3조)

○ 장학회의 사업 중 서울 포항학사의 운영 등 추가(안 제5조제1항제3호)

○ 기금의 재원 정비(안 제6조)

○ 장학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7조의2)

○ 준용 규정 신설(안 제19조)

○ ‘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에 따른 용어 정비

다. 관련법령

○ 「교육기본법」 제28조(장학제도 등)

○ 「민법」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

❍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적용 범위)
❍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❍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및 제20조(재정 지원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경희)

- 본 조례안은 포항시 장학회 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,

❍ 종합검토 결과

- '포항시 장학회' 재정상황은 2023년도 결산기준 자산 366억 1,900만원, 부채 1억 9,800만원, 자본 364억 2,100백만원으로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0.54%임.

- 또한, 2025년 예산액은 전년대비 14.19% 감소한 28억 3,5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사업수입에 8억 6,100백만원, 지원금 3억원, 기타수입 16억 7,400백만원이며, 지출예산은 사업비 18억 6,600만원, 기타 2억 8,400만원, 예비비 6억 8,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 포항시에서 매년 3억원을 출연하고 있음.

- 기 조성된 포항시 장학기금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이 아닌 「교육기본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대통령령인 「장학금규정」에 따라 조성됨에도 불구하고, 기존 조례 제7조의2에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,

- 검토결과 안 제7조의2를 삭제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사료되나, 포항시에서 '포항시 장학회'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기금을 충당하고자 출연하고 있는 만큼, 앞으로 '포항시 장학기금' 관리·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고, 예산심사 시에도 출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